소통과 신뢰로 하나되는 창원특례시의회

제156회 창원시의회 (임시회)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6.10.27.)

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

창 원 시 의 회

(기획행정위원회)

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 10. 27.(화)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1. 심사 경과

가. 제 출 일: 2026. 10. 16.

나. 제 출 자: 창원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6. 10. 20. (의안번호 제105호)

라. 상정 및 의결: 제1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6.10.27.)

2. 제안설명 요지 (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)

최근 아파트등을 비롯한 공장 · 창고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, 생명 · 안전과 관련된 신고포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소방청에서 시 · 도별로 달랐던 신고포상 대상 시설 범위와 포상금 지급 방법을 표준화한 사항을 반영하여 화재 예방 및 인명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려는 것임.

3. 주요 내용

가. 조례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정비(불법행위→위반행위)함에 따라,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.(안 제명)

- 현행: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
- 개정: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

나. 포상으로 현금성과 현물을 병행하여 지급하던 것을 현금성으로 일원화하여 정의 규정으로 둠.(안 제2조)

다. 신고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등을 비롯하여 의료시설, 운동시설, 오피스텔, 공장, 창고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을 추가함.(안 제3조)

대상 시설물 종류: 8종	대상 시설물 종류: 15종
(대상) 문화 및 집회, 판매(대형마트·전문점·백화점·쇼핑센터·복합쇼핑몰에 한정함), 운수, 노유자, 숙박, 위락, 복합건축물(판매 또는 숙박 포함 한정), 다중이용업	**(대상)** **아파트등**, 문화 및 집회, 판매(대형마트·전문점·백화점·쇼핑센터·복합쇼핑몰에 한정함), 운수, **의료**, 노유자, **운동**, **오피스텔**, 숙박, 위락, **공장, 창고, 관광 휴게**, 복합건축물(판매 또는 숙박 포함 한정), 다중이용업

라. 19세 이상 창원 시민으로 한정한 신고자 요건을 삭제함.(안 제4조)

4. 참고 사항

○ 관계 법령 등 (안건책자 참조)

5. 검토 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정이)

□ 개정 목적 및 주요 내용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청의 신고포상제도 표준화 취지를 반영하여 신고 대상 시설과 위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, 포상금 지급방식을 현금성 수단으로 일원화하는 한편, 신고자 요건과 심사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.

○ **【안 제명 및 안 제1조】** 조례에서 사용하는 '불법행위' 라는 표현을 상위법령과 준칙에 맞춰 '위반행위' 로 변경하고,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5조제4항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○ 【안 제2조(정의)】 포상금을 현금,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정의하고, 그 밖의 용어는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하여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○ 【안 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】 신고 대상 시설을 기존 8종에서 아파트등, 의료시설, 운동시설, 오피스텔, 공장, 창고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등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함.

○ 【안 제4조(신고】 기존의 ‘19세 이상 창원시민’이라는 신고자 요건을 삭제하여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.

○ 【안 제7조(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설치 등)】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사건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, 소방공무원 외에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.

○ 【안 제7조(포상금의 지급)】 포상금을 신고 1건당 5만 원으로 통일하고, 동일인에 대한 지급 상한액을 월 30만 원, 연 300만 원으로 정함.

○ 【안 제9조(포상금의 지급 제외)】 허위 신고, 증거 부족,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의 신고 등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를 구체화함.

○ 【안 제조(포상금의 환수)】 부적격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□ 종합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아파트, 공장 및 창고시설 등에서 대형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고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, 소방청의 「소방시설 및 피난·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준칙(안)」을 반영하여 제도를 현행화하려는 것임.

○ 특히 시·도별로 상이한 신고포상제 운영 사항을 표준화하여 시민의 제도 인식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,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아파트등과 공장·창고시설, 운동시설·관광 휴게시설 및 오피스텔 등을 신고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적 관리와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자 함.

○ 또한 현금·상품권 등 현금성 포상으로 지급방식을 일원화하고, 신고 1건당 5만 원 및 동일인에 대한 월간 30만 원·연간 300만 원의 지급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은 지자체별로 달랐던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.

○ 아울러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반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신고자 요건을 완화하며,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○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신고포상제도의 표준화와 현행화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,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.

6. **질의 · 답변 요지**: 기재 생략

7. **토론 요지**: 기재 생략

8. 심사 결과: **원안 가결**

9. **소수의견 요지**: 없음

10. **기타 필요한 사항**(부대의견, 건의 사항, 촉구사항 등): 없음